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4. 3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4월 9일

나. 발 의 자: 남완현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남완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상호 보완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 안 제3조제1항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2항2호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빗물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장려를 위해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민·관 협력, 상호 보완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

❍ 검토 결과

-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전례 없는 폭우·가뭄 등으로 전국에 걸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17개의 자치구에서 빗물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특히, 우리 구는 2022년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주택 등 5,273채,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2023년에도 문래동 상가 등이 침수되는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홍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빗물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 도시침수, 홍수 등의 재해는 구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와 직결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침수·홍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7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남완현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 침수,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상호 보완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4. 00. ~ 4. 00.)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을 말한다.

나.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을 말한다.

2.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 촉진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에 필요한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빗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빗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의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민·관 협력 등) 구청장은 빗물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협력할 수 있다.

제7조(상호 보완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빗물관리 업무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빗물관리 업무와 중복 또는 충돌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